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성화를 위한 한□미간 비교 연구*

박 석 재**

-
- I. 서론
 - II.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특성 및 활용 유형
 - III. 한국·미국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 현황
 - IV. 결론
-

I. 서 론

국제 거래에 있어서 보증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불안을 느낀다. 이러한 불안을 해결하기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5-041-B00349)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교수.

위하여 개발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독립적 보증과 스탠드바이 신용장¹⁾이다. 양자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하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그 기능은 보증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신용장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신용장통일규칙(UCP) 또는 ISP 98의 지배를 받는다. 반면 독립적 보증은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인 URDG의 지배를 받는다.

이 중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전 세계적으로 보증에 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에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 기인하며 또한 신용장이 보증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증이 필요한 부문에서 동 신용장 대신 보증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보증에 비해 유용한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증이 사용되는 분야에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널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용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 유형을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양국에서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이용 실태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실무계에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이용 증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관련된 국내외의 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방식과 실태 분석 방식을 병행하고자 한다.

II.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특성 및 활용 유형

1.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특성

1) 독립적 보증과의 비교

스탠드바이 신용장이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non-performance, default)에

1) standby letter of credit은 국내에서는 주로 보증신용장이라 번역되지만, 보증이라는 용어는 신용장의 독립성과 상반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원어 그대로 스탠드바이 신용장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대비하여 채권자(신용장의 수익자)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개설된다. 주로 입찰보증과 계약이행보증 등의 채무보증목적을 위하여 개설되며, 또한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그 지역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모기업의 의뢰로 본국에서 개설되어 개설은행이 그 변제를 보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²⁾ 동 신용장은 미국에서 국제적 대부, 건설계약, 리스계약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통상은 주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이라는 진술서 등 신용장에 규정되는 단순한 서류와 교환으로³⁾ 개설은행은 지급에 응한다.⁴⁾

이에 대하여 국제거래에서는 또한 주된 채무로부터 독립한 법률적 성질, 즉 독립□추상성을 가진 독립적 보증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독립적 보증을 발행하는 은행은 주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원인계약상의 항변을 원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⁵⁾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독립적 보증은 채무자의 불이행에 대해 은행 또는 보증 회사가 채권자에 대해 보증을 해 준다는 측면에서 법률적으로는 같은 것이며,⁶⁾ 전자는 주로 미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후자는 주로 유럽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용 국가의 차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은행의 보증서 발행에 대한 법적 권한이 제한⁷⁾되었던 미국의 은행들로부터 최초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보증서 발행은 상업 은행의 통상적인 기능이 아니라는 미국 규제 당국의 견해에 토대를 두었

2) 柴原友範□江尻武之□石川雅啓, 『實踐貿易實務』, ジェトロ(日本貿易振興機構), 2008, p.169.

3) 채무불이행의 사실의 유무와는 관계없다.

4) 八尾 晃, 『貿易取引の基礎』, 東京經濟情報出版, 2007, p.169.

5) 相澤吉晴, 『銀行保證狀[スタンドバイ信用狀]と國際私法』, 大學教育出版, 2003, p.1.

6) 독립적 보증은 신용장의 대표적 특성인 독립성 원칙과 엄격일치성 원칙을 공유한다. 따라서 만일 보증의 제조조건이 충족된다면 은행은 기본계약의 사실상 위반 여부 및 보증수혜자가 실제로 손실을 입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한다.(R. Goode,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shing S.A., 1992, p.8)

7) 이 법은 1864년 6월 3일 제정된 국가은행법(National Banking Act)이다. 동 법은 은행이 종사 가능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는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 보증을 발행하는 것은 권한일탈(ultra vires=beyond the powers)로 간주되며, 보증□보험회사의 고유 업무 사항이라고 믿어지고 있었다(新堀聰・椿 弘次, 『國際商務論の新展開』, 同文館出版, 2006, p.154).

다. 이와 달리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자금 지급을 이행하는 형태로 개설되어 이러한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주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에서도 보증서 발행에 대한 제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⁸⁾

반면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기능상 독립적 보증과 유사하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보증이 아닌 신용장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동 신용장은 독립적 보증에 비해 준거규범의 안정성, 법률적 확실성, 실무에서의 선호 등의 이유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⁹⁾ 또한 동 신용장은 통상적인 독립적 보증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여러 목적의 금융 지원 수단으로 발전되어 왔다.¹⁰⁾ 이는 무역업계 및 은행업계가 보증보다는 신용장과 더 친숙하다는 점과 특히 기본계약으로부터 은행 확약의 독립성에 관하여 보증의 경우에는 비교적 법률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신용장의 경우는 확실하다는 차이점에 기인한다.¹¹⁾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독립적 보증 양자를 모두 발행하고 있다.

2) 화환신용장과의 비교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화환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서류의 엄격일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지만,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화환신용장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후자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원인거래에서 선적의무 등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선하증권 등의 서류로부터 개설은행의 금융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반하여, 전자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이 원인거래상의 채무를 불이행 또는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부터 개설은행의 금융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¹²⁾ 즉,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화환신용장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나,

8) 대한상공회의소 편, 『UCP 600(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p.11.

9) 박석재, 『특제 비즈니스 계약에서의 보증수단 및 유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p.218.

10) 대한상공회의소 편, 전거서, p.12.

11) UNCITRAL,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guarantee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CN.9/301), para.25.

12) 채동헌, 『국제거래와 법』, 청림출판, 2004, pp.122~123.

화환신용장이 재화나 용역의 전달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반면,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대개의 경우 수입상이 지급하거나 수출상이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을 보증해 준다는 데 차이가 있다.¹³⁾

또한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화환신용장은 전자의 개설자는 보통 지급을 豫期하고 있지 않으며, 스탠드바이 신용장 하에서 어음의 제시 또는 지급 요구가 있다면 무엇인가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후자의 개설자는 매도인이 발행하는 어음의 지급을 豫期하고 있으며, 지급은 거래의 기초가 되고 있는 매매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의 결과라는 점에서 다르다.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기초가 되는 계약의 당사자간의 관계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발동되는 것이 되므로 개설은행의 고객은 수익자가 지급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대부분 계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판정에 불복을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화환신용장의 고객은 동업자간에서의 신용을 지키고, 동 수익자와의 계속적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도인이 지급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보통이다.¹⁴⁾

마지막으로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일반적인 물품대금의 직접적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일종의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이다.¹⁵⁾ 이에는 보통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 또는 거래선의 대 본사물품수입과 관련하여 현지은행에 현지금융담보조나 건설·용역 및 플랜트수출과 관련한 입찰보증(bid bond),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하자보증(maintenance bond),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등에 대한 지급보증서(letter of guarantee)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¹⁶⁾

화환신용장에서는 환어음과 상업송장, 선하증권, 보험서류 및 검사증명서 등 선적서류와 기타 서류들을 요구하는데 반해, 스탠드바이 신용장 하에서는

13) 대한상공회의소 편, 전계서, p.11.

14) 西 道彦, 『貿易取引の電子化』, 同文館出版, 2003, p.176.

15) 스탠드바이 신용장도 어음 또는 지급청구서와 불이행 통지서 등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Standby Documentary Credit과 어음 또는 지급청구서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Standby Clean Credit으로 세분할 수 있다(來住哲二, 『基本貿易實務』, 同文館, 2000, p.108).

16) 강원진, 『제5판 신용장론』, 박영사, 2007, pp.120-121.

환어음에 단순히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았다거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단순한 진술서만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¹⁷⁾

2.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 유형

1) 입찰보증

입찰보증(Bid Bond, B-Bond, Bid Guarantee)은 해외 발주처가 입찰의 증거로 보증서를 요구할 때 사용된다. 즉, 입찰보증은 입찰자가 낙찰 이전에 그의 입찰을 철회 또는 변경하지 않을 것, 입찰자가 입찰승낙의 계약서에 미서명하거나 또는 입찰서류에서 기술된 다른 의무를 미수행할 위험으로부터 보증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¹⁸⁾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5~10% 정도를 3~6개월 기간에, 낙찰자가 본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때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¹⁹⁾ 입찰보증이 요구되는 분야로는 일반적으로 공공토목공사, 건설 프로젝트 및 설비의 정부조달과 관련한 국제계약에서 입찰이 행해지는 모든 경우들을 들 수 있다.²⁰⁾

2) 이행보증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P-Bond, Performance Guarantee)이란 수출입계약 또는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할 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를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수출상 또는 공급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²¹⁾ 이 점에 있어서 이행보증은

17)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편, 『수출입업무 길라잡이』, 외환은행, 2007, p.107.

18) F.V.M., Wolfgang, "Recent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Standby Letters of Credit, Bank Guarantees and Performance Bonds", *Current Problems of International Trade Financing*, 2nd ed.(edited by E.P. Ellinger), Butterworths, 1990, pp.210~211.

19)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편, 전계서, p.108.

20) M. Rowe, *Guarantees,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Other Securities*, Euromoney Publications, 1987, p.73.

21)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편, 전계서, p.108.

회환신용장과 반대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즉, 회환신용장은 매도인의 계약의 무 이행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증서이지만, 이행보증은 주채무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증서라는 점에서 상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²²⁾

3) 선수금환급보증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AP Bond, Repayment Guarantee)이란 수입상 또는 발주자가 수출상 또는 물품·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보증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증서의 목적은 선수금이 합당한 목적을 위한 사용을 보장하거나 또는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시공업자의 계약 위반의 경우에 발주자가 선수금을 환급받기 위함이다. 전자의 경우에 보증수혜자는 만일 시공업자가 계약상의 프로젝트에서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선수금환급보증하에서 선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발주자는 만일 관련 프로젝트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는다면 선수금환급보증하에서 선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²³⁾ 일반적으로 선수금²⁴⁾의 100%를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수출상 또는 공급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²⁵⁾ 예를 들면 플랜트와 선박건설 등의 연불수출에서 수출상이 선불을 받고 있는 경우 수출상이 계약을 이행불가능한 때의 선수금 반환보증용으로 사용된다.²⁶⁾

4) 지급보증

대출(물품대금)지급보증(Payment Guarantee)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의 매수인 또는 발주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매도인 또는 시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²⁷⁾ 즉, 시공업자는 발주자가 과연 공사

22) 박석재, 전계논문, p.215.

23) M. Rowe, *op. cit.*, p.76.

24) 선수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5~10%가 된다.

25)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편, 전계서, p.108.

26) 横山研治, 『貿易實務の教科書』, 大學教育出版, 2006, p.108.

27) F.V.M. Wolfgagn, *op. cit.*, p.211.

대금을 성실히 지급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은행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이다.²⁸⁾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를 연지급 기간을 포함하여 계약만료일까지, 수입상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²⁹⁾

5) 기타

유보금환급보증(Retention (Money) Bond)이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하자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유보금을 예치하게 되는데, 동 유보금을 선지급하는 대신 하자 발생 등 계약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유보금의 환급을 보증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5%를 계약이행 후 1~2년 동안 하자 발생 등 계약위반 사실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³⁰⁾

하자보증(Maintenance Bond, Warranty Guarantee)이란 계약이행 후 하자 발생시 물품의 반품 및 보수공사를 요구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보증금 대신 은행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5%를 계약이행 후 1~2년 동안³¹⁾ 계약에서 정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³²⁾

Ⅲ. 한국·미국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 현황

1. 미국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역사 및 활용 현황

1) 미국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역사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미국에서 개발되었고 현재 동 신용장을 가장 많이 사

28) 이재홍, 「보증신용장 및 관련문제」, 『사법행정』, 제353□355호, 1990, p.63.

29)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편, 전계서, p.109.

30)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편, 전계서, p.108.

31) Performance Bond와 교체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32)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편, 전계서, p.108.

용하고 있는 국가도 미국이다. 먼저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사용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과거 은행의 수권된 활동을 열거하고 있는 聯邦免許銀行法(National Bank Act 1864)을 고려하여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³³⁾ 聯邦免許銀行法에는 은행의 보증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었지만 1899년 Bowen v. Needles National Bank 사건³⁴⁾에서 은행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는 것은 은행의 權限外의 行爲(*ultra vires acts*)로서 이는 무효임을 판결하였기 때문에 은행의 보증행위에 대한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³⁵⁾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은행들은 보증이 필요한 분야에서 보증 대신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활발히 사용하여 왔다.

2) 미국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 현황

최근 미국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 1996년과 2006년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1997년 12월의 보고서에서 국제은행가협회(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ers)는 1996년 12월 31일 현재 미국에서 영업중인 비미국 은행에 의하여 개설된 未拂의 스탠드바이 신용장 및 다른 신용 강화물(credit enhancements)에 관하여 US\$ 4,872억의 수치에 대하여 말하였다. US\$ 2,000억로 계산된 미국에서의 미국 은행들에 의하여 개설된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합계할 때 미국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총계는 대략 US\$ 6,872억이었다.³⁶⁾ 이를 최근의 2006년도 현황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³⁷⁾

아래의 도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6년도 미국의 300대 상업은행의 스탠드바이 신용장 총계는 US\$ 1조 6,278억이며, 미국에서 영업중인 비미국 은행의 스탠드바이 신용장 총계는 US\$ 8,670억이며, 미국 연방보증 저축기관

33) R.I.V.F. Bertrams,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2nd revise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p.4.

34) 94 F.925(9th Cir. 1899).

35) R.A. Lord, "The No-Guaranty Rule and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Controversy", *Banking Law Journal*, Vol.96, 1979, p.52.

36) Anonymous, "UPDATE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2, 1998, p.3.

37) Anonymous, *Documentary Credit World*, 2006. 6, 7/8, 9, 10월호 및 2007. 1, 2, 3, 4월호 참조.

의 스탠드바이 신용장 총계는 US\$ 261억로서 이들 금액을 합계할 때 2006년 현재 미국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총계는 대략 US\$ 2조 5,209억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300대 상업은행의 신용장 활용 현황통계
(단위 : US\$1,000, 2006년도)

	금융보증용 스탠드바이 신용장	이행보증용 스탠드바이 신용장	스탠드바이 신용장 총계	회환신용장 및 유사한 신용장	신용장 총계
1사분기	330,622,297	52,143,320	382,765,617	24,659,766	407,425,383
2사분기	344,639,943	52,613,478	397,253,421	28,207,903	425,461,324
3사분기	349,482,564	55,726,457	405,209,021	28,874,026	434,083,047
4사분기	362,244,946	80,358,070	442,603,016	27,792,182	470,395,198
총 계	1,386,989,750	240,841,325	1,627,831,075	109,533,877	1,737,364,952

미국에서 영업중인 비미국은행의 신용장 활용 현황 통계
(단위 : US\$1,000, 2006년도)

	미국 수취인에게로의 스탠드바이 신용장	비미국 수취인에게로의 스탠드바이 신용장	스탠드바이 신용장 총계	회환신용장 및 유사한 신용장	신용장 총계
1사분기	197,428,374	30,894,951	208,541,279	10,797,215	219,338,494
2사분기	202,054,005	33,369,726	217,083,113	11,131,062	228,164,175
3사분기	201,609,525	34,396,753	217,816,660	10,718,173	228,534,833
4사분기	209,798,008	35,169,332	223,646,878	10,532,115	234,178,993
총 계	810,889,912	133,830,762	867,037,930	43,178,565	910,216,495

미국 연방보증 저축기관의 신용장 활용 현황 통계
(단위 : US\$1,000, 2006년도)

	스탠드바이 신용장 총계	회환신용장	신용장 총계
1사분기	6,328,571	753,479	7,082,050
2사분기	6,666,059	833,375	7,499,434
3사분기	6,967,166	929,442	7,896,608
4사분기	6,215,524	792,882	7,008,406
총계	26,177,320	3,309,178	29,486,498

2. 한국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역사 및 활용 현황

1) 한국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역사

한국에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최초로 활용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이며 외국에서의 금융의 담보를 위한 지급보증의 형태로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³⁸⁾ 즉, 한국은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2차 『무역진흥확대회의』(1965년 2월)에서 스탠드바이 신용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활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동년 2월 현지금융담보를 위한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한국은행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후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현지금융차용지급보증 용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7년 2월 한국외환은행의 설립과 함께 한국은행에서 취급하던 스탠드바이 신용장 개설업무가 갑류외국환은행으로 이관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 상사의 해외영업활동을 보다 신속히 지원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970년 11월 및 1972년 12월 2회에 걸쳐 채권발생 등 당사자 인증권한을 갑류외국환은행장에게 위임하였고 우리나라 대외거래 규모의 확대와 경제의 급속한 개방화에 발맞춰 현지금융 용도도 점차 확대하였다.³⁹⁾

2) 한국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 현황

최근 한국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 현황을 고찰하기 위해 1996년과 2006년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⁴⁰⁾ 먼저 1996년 7월 29일 현재 한국 상업은행의 스탠드바이 신용장 개설 건수는 110건이며, 개설금액은 US\$ 4억 5,898억 달러였다.⁴¹⁾ 이를 최근의 2003년도 현황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38) 임홍근,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대한 이해 - 미국의 판례이론을 기초로 해서』, 『중재』 제7권 8호, 대한상사중재원, 1983. 8, p.21.

39) 한국외환은행 편, 『현지금융안내』, 업무자료 영지-243, 1996, pp.11~13.

40) 우리나라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잡고 있지 않다. 이는 한국은행이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이 동 신용장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96년과 2006년의 우리나라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 실적에 관해 언급이 있는 박석재, 박광서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에 나와 있는 수치를 활용하기로 한다.

41) 박석재, 『스탠드바이(Standby)신용장의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

2003년 우리나라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실적 및 활용실태를 추정해 본 바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전체 신용장 개설액(US\$695억)의 5% 정도인 US\$35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개설 추정액

(2003.12.31 기준, 단위: US\$ 1,000)

	전체 신용장 개설	회환신용장	스탠드바이 신용장	스탠드바이 신용장 비율
한국외환은행	10,503,113	9,977,957	525,156	5 %
우리은행	9,530,000	8,862,900	667,100	7 %
신한은행	8,004,423	7,684,246	320,177	4 %
국민은행	6,993,605	6,867,459	126,145	2 %
기타은행	34,427,002	32,592,673	1,834,330	5 %
계	69,458,143	48,872,757	3,472,970	5 %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 유형을 살펴보면 이행보증, 선급금환급보증, 입찰보증, 지급보증, 매매계약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외환은행의 경우 이행보증(50%), 선급금환급보증(30%), 입찰보증(15%), 지급보증(5%), 매매계약(0%), 기타(0%)로 응답하였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이행보증(35%), 선급금환급보증(25%), 입찰보증(20%), 지급보증(10%), 매매계약(5%), 기타(5%)로 응답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스탠드바이 신용장 활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은행의 외환담당자들은 먼저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를 거론하고 있다. 즉,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대하여 은행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통한 지급보증도 여신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개설의뢰인에 대하여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현실은 외국과 같은 신용이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6. 12, p.90. 한국 상업은행은 국내의 은행들 중 처음으로 1996년 4월 7일부터 외화지급보증 온라인 개발에 착수하여 그 당시 스탠드바이 신용장과 각종 은행보증에 관한 자료를 전산 처리중이었다. 그렇지만 다른 은행들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하여 전혀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다른 은행들에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업의 경우 신용대출, 담보대출의 형식을 취하게 되고 따라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은행담당자들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즉, 은행지점 등 일선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으며 본점의 몇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또한 '회환실무 업무 매뉴얼'에 소개된 스탠드바이 신용장도 여러 가지 특수 신용장 중의 하나로 소개되어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정확한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 실무자의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대한 이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⁴²⁾

IV. 결 론

국제 거래에서 보증이 필요한 분야에서 미국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독립적 보증과 스탠드바이 신용장 양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액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양 증서를 비교해 볼 때 스탠드바이 신용장은 기능상 독립적 보증과 유사하지만 형식에 있어서는 보증이 아닌 신용장이라는 차이가 있다. 동 신용장은 독립적 보증에 비하여 준거규범의 안정성, 법률적 확실성, 실무에서의 선호 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대한 홍보 부족 및 무역업자들의 무지로 인하여 동 신용장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국제거래의 형태가 과거보다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건설 등의 서비스 거래와 지식재산권의 거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계 및 실무계를 중심으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성질, 장점 등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국은행에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통계 조사업무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점차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활용이 늘어

42) 박광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국내 이용증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12, pp.61-64.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통계 조사조차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동 신용장에 관한 관심 및 활용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무역업계 및 은행 업계에 대해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대한 홍보 제고 및 은행원들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 거래의 환경에서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보증이 필요한 분야에서 독립적 보증 대신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 및 은행들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제5판 신용장론』, 박영사, 2007.
- 대한상공회의소 편, 『UCP 600(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
- 박광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국내 이용증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12.
- 박석재, 『꼭제 비즈니스 계약에서의 보증수단 및 유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 _____, 『스탠드바이(Standby)신용장의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6. 12.
- 외환은행 외환업무부 편, 『수출입업무 길라잡이』, 외환은행, 2007.
- 이재홍, 『보증신용장 및 관련문제』, 『사법행정』, 제353□355호, 1990.
- 임홍근, 『보증신용장(Stand-by L/C)에 대한 이해 - 미국의 판례이론을 기초로 해서』, 『중재』 제7권 8호, 대한상사중재원, 1983. 8.
- 채동현, 『국제거래와 법』, 청림출판, 2004.
- 한국외환은행 편, 『현지금융안내』, 업무자료 영지-243, 1996.
- 來住哲二, 『基本貿易實務』, 同文館, 2000.
- 相澤吉晴, 『銀行保證狀[スタンバイ信用狀]と國際私法』, 大學教育出版, 2003.
- 西 道彦, 『貿易取引の電子化』, 同文館出版, 2003.
- 柴原友範□江尻武之□石川雅啓, 『實踐貿易實務』, ジェトロ(日本貿易振興機構), 2008.
- 新堀 聰・椿 弘次, 『國際商務論の新展開』, 同文館出版, 2006.
- 八尾 晃, 『貿易取引の基礎』, 東京經濟情報出版, 2007.
- 橫山研治, 『貿易實務の教科書』, 大學教育出版, 2006.
- Anonymous, "UPDATES", *Documentary Credit World*, Vol.2, 1998.
- _____, *Documentary Credit World*, 2006. 6, 7/8, 9, 10월호 및 2007. 1, 2, 3, 4월호 참조.
- Bertrams, R.I.V.F.,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2nd revise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6.
- Goode, R.,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shing S.A., 1992.

Lord, R.A., "The No-Guaranty Rule and the Standby Letter of Credit Controversy", *Banking Law Journal*, Vol.96, 1979.

Rowe, M., *Guarantees,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Other Securities*, Euromoney Publications, 1987.

UNCITRAL, "Stand-by letters of credit and guarantee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CN.9/301).

Wolfgang, F.V.M., "Recent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Standby Letters of Credit, Bank Guarantees and Performance Bonds", *Current Problems of International Trade Financing*, 2nd ed.(edited by E.P. Ellinger), Butterworths, 1990.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crease of Practical Use of Standby Letters of Credit in Korea and U.S.A.

Park, Suk Jae

Two kinds of security devices such as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se devices design to protect one of the parties from a breach by its counter-party. Main uses of these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are as follows : bid guarantee, performance guarantee, advance payment guarantee, payment guarantee, retention guarantee, etc.

The standby letters of credit were first invented in the U.S.A. and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contracts in the U.S.A. But the practical use of these credits is very unsatisfactory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rve the increase of practical use of the standby letters of credit in Korea through the comparison study on the practical use of the credits between Korea and the U.S.A.

Both devices are very similar in function, but they are very different in forms. The one has the form of letter of credits but the other has the form of guarantee. The letter of credit has the stability of governing rule, the legal certainty, and the preference in the field of the trade community comparing to the guarantee.

I recommend to use standby letter of credit instead of bank guarantee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because of the merits of the credit aforesaid.

Key Words : Guarantee, Standby Letter of Credit, Performance Guarantee, Bid Guarantee
